

전주지방법원 2021. 6. 30 선고 2020나6675 판결 [계약금등반환청구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1. 6. 30 선고 2020나6675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20. 7. 17 선고 2018가단19561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한

피고, 항소인1. 주식회사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

변론 종결2021. 6. 2.

판결 선고2021. 6. 30.

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0. 7. 17. 선고 2018가단19561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10. 19.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,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8, 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,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.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나상훈

판사오창민

판사조지환